


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가정복지과-106786 |
| 결재일자 | 2015.7.17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

| | |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주 무 관 | 보육행정팀장 | 가정복지과장 | 주민생활복지장 |
| 홍광복 | 최병철 | 정정숙 | 07/17 오영수 |
| 협 조 | | | |

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심사계획

|  대상시설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시설명 | 소재지 | 위탁현황 | | 규모 (㎡) | 직원 (명) | 비 고 |
| | | 위탁체 | 만료기한 | | | |
| 육아종합 지원센터 | 여의대방로 36길 11 | 동작복지재단 | 2015.10.8 | 943.98 | 17 | 재위탁 |
| 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| | | | | | |
|  심사일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5. 7. 8 : 재위탁 신청(동작복지재단→동작구) ○ 2015. 7. 16 ~ 7. 21 : 위탁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○ 2015. 7. 28 ~ 7. 31 : 보육정책위원회 심의(서면심사) | | | | | | |

**주민생활복지국
가 정 복 지 과**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| 검토항목 | 검토여부 | 비고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추진근거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(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) | |
| 사업추진유형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 | |
| 예산확보사항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(국 , 시 , 구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 | 예산팀조 () |
| 이해관계인유무 | ○ 주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|
| 타자원활용가능성 | ○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서울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|
| 홍보필요성 | ○ 홍보대상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 |

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심사계획

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체 운영능력 검증을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관련 근거

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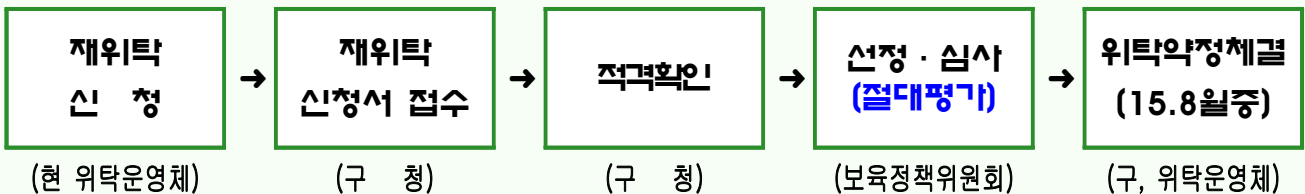
제21조(위탁)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,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
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

II 대상 시설

| 시설명 | 소재지 | 위탁현황 | | 규모 (㎡) | 직원 (명)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
| | | 위탁체 | 만료기한 | | | |
|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| 여의대방로36길 11 | 동작복지재단 | 2015.10.8 | 943 | 17 | 재위탁 |

III 심사 절차

선정 절차



■ 재위탁 접수

- 대 상 :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(現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)
- 제출서류【별첨 1】

■ 위탁운영체 적격여부 확인

- 내 용
 - 재위탁 신청 서류의 진위성 여부 확인
 - 신청제외 대상 항목 저촉여부 등 자격 검증
- 시 기 : 최종 심사 전까지
- 방 법 : 각 지자체 등에 위탁운영체 자격조회 및 법인 현장 방문

■ 위탁운영체 심사 · 결정

- 심사위원회 :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
- 심사기준【별첨 2】
- 심사방법 : 공통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, 가점 등을 검토 조정하여 심사기준 확정
- 평가방법 : 절대평가제 :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시 위탁 운영체로 선정
(운영체 재위탁 부적격 처리 시, 공개경쟁으로 추진)

※ 점수산정시 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각1인의 점수를 제외하고,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

※ 심사 및 평가방법,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최종결정

■ 보육정책위원회 개최

- 일 자 : 2015. 7. 28(화) ~ 7. 31(금)
- 방 법 : 서면심사
- 심의위원 :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(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)
- 선정방법 : 심사를 통한 재위탁(재위탁 부적격시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체 선정)

위탁 약정체결

- 약정시기 : 2015. 8월중
- 약정기간 : 3년(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)
- 체결방법 : 동작구청장과 수탁자인 위탁운영체 대표와의 약정체결
- 약정사항
 -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,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 사항,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 등

붙 임 : 1. 재위탁신청시 제출서류 1부
2. 재위탁 심사표 1부. 끝.

【별첨 1】

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신청시 제출서류

| 구 분 | 서 류 항 목 | 운 영 체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|----|----|
| | | 법인 | 단체 | |
| 개별사항 | •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| ○ | | |
| | •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| | ○ | |
| | •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| ○ | ○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신청서 • 법인·단체의 대표자의 경력사항 (이력서, 보육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,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) • 경비의 지급능력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 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- (법인의 경우)법인명의 재산, (단체)단체명의 재산, • 법인·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• 법인·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•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서(예산서 포함) | | | |

【별첨 2】

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재위탁 심사표

(2009.8.20 보육정책위원회 의결)

| 연번 | 심사항목 | 내 용 | 확인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|
| 1 | 운영 주체의 공 신 력 (10 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체의 도덕적, 법적건정성 • 운영주체 및 종사자의 보육기여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탁기간동안 운영주체의 법령위반 및 지도감독에서 들어난 지적사항 • 위탁기간 동안의 수상 및 각종사업 참여실적 | |
| 2 | 재정관리 능 력 (15 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체의 재정관리 실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결산현황 • 회계장부 및 대장비치정리, 지출의 투명성 | |
| 3 |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실적 (40 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탁기간 동안의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실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원야기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여부 등을 감안 평가 |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탁시 사업계획 이행여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탁계약시 제시한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 |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육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실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담사항 및 시설이용실적(회수) 등 |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사회와 협조체제 유지여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여부 | |
| 4 |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계획 (20 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향후 위탁기간동안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체성,타당성,이행가능성 |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확인 |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신성,전문성,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적합성 여부 확인 |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안전 및 장비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안전관리 및 장비운영계획 | |
| 5 | 운영체 대표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(15 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체 대표의 운영의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육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및 열의 |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체 대표의 전문성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자격증 보유현황,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, 경력 등으로 평가 | |
| 총 점 | | | | |